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제9조 관련)

1.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선박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가. 강선(鋼船)	선령이 2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령이 2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차 평가 실시 후 5 년의 범위에서 해양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나. 알루미늄선	선령이 16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령이 19년이 되는	
다. 강화플라스틱선		해의 12월 31일까지	

비고: 제1호에 따른 선령(船齡)은 해당 선박을 진수(進水)한 날부터 계산한다.

2. 안전도 평가의 평가 항목

선박 구분		1차 평가	2차 및 3차 평가
가. 강선 나. 알루미늄선	선체	1) 현상평가 2) 두께측정	1) 현상평가 2) 두께측정 3) 강도평가 4) 피로강도평가(강선만 해당한다) 5) 비파괴평가(알루미늄선만 해당한다)
	기관	1) 현상평가 2) 성능평가 3) 해상 시험운전	1) 현상평가 2) 성능평가 3) 해상 시험운전 4) 안전장치 평가
	전기	1) 현상평가 2) 성능평가	1) 현상평가 2) 성능평가 3) 배전반 차단기 평가 4) 절연 내력평가
다. 강화플라스틱선	선체	현상평가	현상평가
	기관	1) 현상평가 2) 성능평가 3) 해상 시험운전	1) 현상평가 2) 성능평가 3) 해상 시험운전 4) 안전장치 평가
	전기	1) 현상평가 2) 성능평가	1) 현상평가 2) 성능평가

			3) 배전반 차단기 평가
			4) 절연 내력평가